국민은행 거치식예금 약관

제 1 조 적용범위

- ① 거치식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합니다)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- ③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지급시기

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. 다만,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②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.
-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.